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928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1. 10. 15.
4. 회부일자 : 2021. 10. 20.

II. 제안이유

- 2022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 교육감 비서·비서관 등 보좌업무와 특정업무 수행의 업무 공백 방지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별정직공무원 정원 증원하며,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통합교육 활성화 등 증가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정원의 총수 증원 (안 제2조): 증 78명 (7,627명 → 7,705명)
 -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증 63명 (7,056명 → 7,119명)

- 교육전문직원 : 증 15명 (565명 → 580명)

2.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 조정 (안 제3조 관련 별표 1)

- 지방공무원 종류 구분 자구 수정: 일반직 → 일반직·특정직
- 일반직·특정직 비율 조정: 감 0.1% (99.9% 이상 → 99.8% 이상)
- 별정직·정무직 비율 조정: 증 0.1% (0.1% 이내 → 0.2% 이내)

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조정 (안 제3조 관련 별표 2)

- 제4호 별정직공무원 구분 및 비율 조정
 - 구분 조정: 5급상당, 6급상당 →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이하
 - 비율 조정: 4급상당 15%이내, 5급상당 55%이내, 6급상당 이하 30%이상

4.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증원 (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총계: 증 78명 (7,627명 → 7,705명)
- 일반직 계: 증 57명 (7,059명 → 7,116명)
 - 4급: 증 1명 (39명 → 40명)
 - 본청(직속기관 포함) 4급: 증 1명 (28명 → 29명)
 - 5급 이하 소계: 증 57명 (6,976명 → 7,033명)
 - 전문경력관 소계: 감 1명 (8명 → 7명)
- 별정직 계: 증 6명 (2명 → 8명)
 - 4급상당: 증 1명 (0명 → 1명)
 - 5급상당 이하 소계: 증 5명 (2명 → 7명)
- 특정직 계: 증 15명 (565명 → 580명)
 -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증 1명 (50명 → 51명)
 - 본청(직속기관 포함)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 증 1명 (28명 → 29명)
 -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 증 14명 (515명 → 529명)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별첨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예산조치 : [별첨1] 비용추계서
3. 협 의 :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음
4. 기 타 :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 입법예고(2021. 9. 29. ~ 2021. 10. 5.) 결과: 의견 없음
 -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 학생인권영향평가: [별첨2]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기타: [별첨 4] ~ [별첨 6] 참고 자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928호로 제출되어 2021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2022년 서울시교육청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와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 개편 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일반직 정원 57명과 별정직 정원 6명, 그리고 특정직 정원 15명 등 총 78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동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원의 총수를 7,627명에서 7,705명으로 조정하고,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구분을 ‘일반직’에서 ‘일반직·특정직’으로 변경하며, 그 기준비율을 ‘99.9%이상’에서 ‘99.8%이상’으로, ‘별정직·정무직 비율’은 ‘0.1%’에서 ‘0.2%’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동 개정조례안은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2]의 별정직 공무원 기준에 ‘4급상당’을 추가하여 그 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또한 이와 같은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표-1] 동 조례안 별표에 대한 신규조문 대비

현 행			개 정 안			
[별표1]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 기준			[별표1]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 기준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구 분	일반직.특정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9% 이상	0.1% 이내	비 율	99.8% 이상	0.2% 이내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4. 별정직공무원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6급상당	구 분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이하
비 율	50% 이내	50% 이상	비 율	15% 이내	55% 이내	30% 이상

○ 이와 같은 정원 조정은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예비통보(학교정책과 -5719, 2021.9.30.)에 따른 기준인원과 총액인건비(7,721명, 6,212억 1천 5백만원)를 고려하여 현행 정원(7,627명)을 78명 증가(3억 9천 3백만원 증가)한 7,705명 규모로 조정한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의 정원 조정은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예비통보에 따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 다만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현재 일반임기제 4급으로 되어있는 교육감 비서실장의 직렬을 일반임기제공무원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별정직 4급 정원을 1명 증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반직 공무원에 포함되어 있는 비서실장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감원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4급 유보정원은 추후 의회의 동의 없이 내부 승진을 위한 별도 정원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조직정원 운영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현황

구 분		현 재	증감	변 경(안)	비 고
정무직	교육감	1	-	1	
일반직	4.5급 이상 소계	61	1	62	
	5급 이하 소계	6,976	57	7,033	
	전문경력관 소계	8	△1	7	
	연구사 소계	14	-	14	
	일반직 계	7,059	57	7,116	
별정직	4급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2	5	7	
	별정직 계	2	6	8	
특정직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0	1	51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515	14	529	
	특정직 계	565	15	580	
	지방공무원 전체	7,627	78	7,705	

-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정원 조정은 통상적으로 매년 초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확정 규모에 따라 이루어져 왔으나, 금번 정원 조정은 총액인건비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동 조례안이 제출되었는바,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3월 1일자 기준으로 특수교육과 신설 과 미래학교추진단 신설 등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에 있어 이를 정원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그러나 통상적으로 조직개편은 기존 조직의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사업추진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인바, 신설 부서의 설치 필요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교육감의 임기가 3개월 남은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것이 자칫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않을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더욱이 조직개편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확한 조직진단과 이를 위한 연구용역 등의 검토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금번 교육청의 조직개편은 이러한 조직체계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이루

어지고 있는바,

이와 같은 조직개편이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미칠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3] 2022년 3월 1일자 조직개편 사항

【본 청】			【교육지원청】	【직 속 기 관】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교육장	학교보건진흥원					
초등교육과(3)	민주시민생활교육과(10)	교육시설안전과(6)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보건·환경지원과	급식지원과	급식운영과	산업안전·보건과	
초등교육과정	생활교육	시설기획	학교시설지원과	행정지원	보건지원	급식품질관리지원	안심급식운영	산업안전·보건	
기초학력·방과후학교	민주시민교육기획·운영	미래학교추진	시설1		환경지원	식생활교육·지원	급식위생관리		
초등인사	상담·대안교육	시설개발	시설2		흡연예방지원				
	성평등	시설관리							
	평화·세계시민·다문화교육	교육공간기획							
	특수교육	공공건축지원센터							
	통합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학생인권교육센터								
	민주시민생활교육지원								

★ 본 청: 1실 3국 7담당관 12과 91담당
 ★ 교육 지원 청: 2국 8과 19담당
 ★ 학교보건진흥원: 5과



【본 청】			【교육지원청】	【직 속 기 관】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교육장	학교보건진흥원					
초등교육과(4)	민주시민 생활교육과(8)	교육시설 안전과(4)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보건지원과 구)보건·환경지원과	환경 지원과 (신설)	식생활교육 지원과 (신설) 구)급식지원과	급식 품질 위생과 구)급식운영과	산업안전·보건과
초등교육과정	생활교육	시설기획	학교시설지원과	행정지원	건강증진	환경위생	식생활연구	품질관리	산업안전·보건
기초학력·방과후학교	민주시민교육 기획·운영	시설개발	학교시설기획 구)시설1						
초등인사	상담·미용건강 구)상담·대안교육	시설관리	학교시설개발 구)시설2						
	대안교육· 학교부정소년지원 (신설) ③교행	공공건축 지원센터	학교시설관리 (신설)						
	특수교육과(4) (신설) ④장학관								
	특수교육기획 구)특수교육								
	특수교육과정 구)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교육운영 구)통합교육								
	특수교육지원 (신설) ③교행								
	성평등								
	평화·세계시민· 다문화교육								
	학생인권 교육센터								
	민주시민생활 교육지원								

★ 본 청: 1실 3국 7담당관 13과 1추진단 95담당(1과 1추진단 4담당 증)
 ★ 교육 지원 청: 2국 8과 20담당(1담당 증)
 ★ 학교보건진흥원: 6과(1과 증)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4. 7.] [대통령령 제30601호, 2020. 4. 7., 일부개정]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관할지역의 교육행정수요 및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2. 업무의 성질·난이도 및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

3의2. 1개의 직위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같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4. 1개의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5. 공립의 각급 학교에는 4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2.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3.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4. 공립의 각급 학교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종류별·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

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거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15조의2(정원 책정의 승인) ① 교육감은 일반직 3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 및 직렬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육감에 소속된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청의 과장·담당관(각각 일반직 3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로 한정한다) 이상
2. 국을 설치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3. 직속기관의 부서장(일반직 3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로 한정한다) 이상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교육전문직원 중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정원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④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